

연구간접비 관리 규정

□ 제정 : 1992. 06. 01.

□ 개정 : 2007. 10. 06.

제1조(연구간접비의 정의)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는 않으나 연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말한다.

제2조(연구간접비 납부) ① 연구간접비의 납부는 연구비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한다.

② 공공연구, 수탁연구 및 개인연구비는 본 산학협력단에 수입결의된 연구비 총액의 일정 비율을 연구간접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간접비 징수비율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연구간접비의 비율) 본 산학협력단에 수입결의된 연구비 총액의 10%로 한다.

제4조(연구간접비의 관리) ① 연구간접비의 관리는 연구비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한다.

② 산학협력단 관리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으로 관리한다.

③ 간접비의 사용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간접비의 사용 범위) 간접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·홍보 활동
2.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
3. 연구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
4. 활성화되지 못한 학문분야의 활성화 교수 연구활성화를 위한 지원
5. 연구관리부서의 연구수행 지원
6. 교수발전을 위한 기타 산업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